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45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문금주 · 윤준병 · 권향엽  
정진욱 · 이훈기 · 임호선  
어기구 · 김문수 · 이재관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지원, 양식업 면허 및 양식업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생물의 폐사, 어장환경 악화 및 양식적지(養殖適地) 변동 등이 나타나고 어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양식장의 생산성 저하와 양식업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기후변화로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한 해역에 대하여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양식시설의 재배치,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양식장 재구조

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 적응해역을 지정하여 해당 해역의 양식장 재구조화 대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기후변화 특별해역을 지정하고 기후변화 특별해역 내 양식장의 폐업 지원 및 지원금 환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한 양식장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등).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양식수산물의 수급 안정, 기후변화 적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품목별·지역별 양식장의 현황 및 전망
2.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
3.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개발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에”를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로 한다.

4.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해역으로 지정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기후변화 적응해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양식시설,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이나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이하 “적응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2. 최근 3년 동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해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응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수면 등 양식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응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의 양식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식량 또는 시설량의 조절

2.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3. 양식장 내 양식시설의 재배치

4. 유어장 운영 등 양식장의 활용 방식 변경

5.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 및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해역의 어장환경, 어업재해 발생 현황, 생산성 변동 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⑦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응해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응해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응해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적응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변화 특별해역(이하 “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제6항에 따른 평가 및 특별해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특별해역 양식장의 폐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2제8항에 따라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의 양식업자가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을 포기하고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은 양식업의 허가는 3년분으로 하고, 양식업권은 8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3. 양식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양식시설을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식장 재구조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사업에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8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거나 양식업권을 취득·임차하여 다시 양식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9조의2(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양식수산물</u> <u>의 수급 안정, 기후변화 적응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u> <u>계획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u> <u>「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u> <u>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허양식장이용개발    협의체(이하</u> <u>“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u>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품목별·지역별 양식장의 현황 및 전망</u></li> <li><u>2.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 방안</u></li> <li><u>3.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개발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u></li> </ol>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양식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식업권을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해역으로 지정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후변화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에서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양식업권의 이전·분

② 면허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양식업권의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면 이전·분할 또는 변경의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신설>

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의 인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기후변화 적응해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하여 양식시설,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이나 양식업권의 위치·규모 조정 등 양식장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을 기후변화 적응해역(이하 “적응해역”이라 한

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해역

2. 최근 3년 동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해역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적응해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식장과 양식장 사이의 수면 등 양식장의 주변 수면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적응해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해역의 양식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의 기후변화 적응 및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입식량 또는 시설량의 조절
2. 양식품종 또는 양식방법의 변경
3. 양식장 내 양식시설의 재배치
4. 유어장 운영 등 양식장의 활용 방식 변경
5.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 및 양식장 재구조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지정권자는 적응해역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해역의 어장환경, 어업재해 발생 현황, 생산성 변동

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어장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⑦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응해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응해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지정권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적응해역의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양식업의 지속적 영위가 곤란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적응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후변화 특별해역(이하 “특별해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응해역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제6항에 따른 평가 및 특별해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5조의3(특별해역 양식장의 폐업 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2제8항에 따라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의 양식업자가 특별해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식업을 포기하고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은 양식업의 허가는 3년분으로 하고, 양식업권은 8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3. 양식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

에 따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 교육·훈련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양식시설을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식장 재구조화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사업에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

<신 설>

원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나 8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거나 양식업권을 취득·임차하여 다시 양식업을 경영하는 경우.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